

# 연구간접비 관리지침 개정사항

산학지원팀팀

## 가. 개정사유

- 의과대학산학협력센터 운영 개편에 따라 의과대학산학협력센터 명칭을 의료기술협력단으로 변경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[별표3]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의과대학산학협력센터 → 의료기술협력단 자구수정

## 다.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신 설>	부 칙 <u>이 지침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/u>	부칙신설

<현행>

[별표3]

###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

구분	금액	비고
산학협력단장	月1,000,000원	※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음.
산학협력단 부단장	月500,000원	
<b>의과대학산학협력센터장</b>	月500,000원	
산학협력정보담당관	月400,000원	
팀장	月400,000원	

<개정(안)>

[별표3]

###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

구분	금액	비고
산학협력단장	月1,000,000원	※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음.
산학협력단 부단장	月500,000원	
<b>의료기술협력단장</b>	月500,000원	
산학협력정보담당관	月400,000원	
팀장	月400,000원	